<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정 보 공 개 서

(PURADAK / 푸라닭)

㈜아이더스에프앤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 . . .

㈜아이더스에프앤비

< 주 의 사 항 >

1.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칭함**)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3.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5.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6.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및 최종 등록일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50218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5-03-06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6-02-11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04(등촌동, 아이더스빌딩)		
대표전화번호	02-323-9001	**대표팩스번호**	02-323-9003
홈페이지 / 대표이메일	www.puradakchicken.com / idusfnb@idusfnb.com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아이더스에프앤비 푸라닭사업부 / 010-8261-9206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법」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1. 가맹본부 소개

2.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3.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4.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5.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6.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7.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8.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9.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0.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별첨 서류

※ 당사에서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는 정확한 내용 및 별첨 서류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하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는 당사의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내용의 일부가 공개되지 않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가맹본부 소개


PREMIUM
CHICKEN
푸라닭 치킨
PURADAK CHICKEN
치킨도 요리다. 푸라닭 치킨
푸라닭 치킨은 스페인어로 "순수한"이라는 뜻을 가진 "PURA"와 닭을 뜻하는 "DAK"의 합성어로
순수함과 정직함으로 요리와 같은 치킨을 고객에게 선사하겠다는 의미를 담고있습니다.
푸라닭의 치킨 메뉴는 오븐구이와 후라이드 방식을 조합하여 자체 개발한 '오븐-후라이드 조리법'으로 만들어져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식감과 함께 치킨 본연의 맛과 풍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설립일과 사업자등록일 및 일반 정보

☞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아이더스에프앤비	영업표지		푸라닭 외 2
주 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04(등촌동, 아이더스빌딩)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5-11-20	2015-11-20	장성식	02-323-9001	02-323-9003
법인등록번호	110111-5896505	사업자등록번호		112-88-00179

2.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대표이사)	장성식/ (주)아이더스에프앤비	푸라닭 외2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04(등촌동, 아이더스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장성식	02-323-9001	02-323-9003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이사)	서기원/ (주)아이더스에프앤비	푸라닭 외2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04(등촌동, 아이더스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장성식	02-323-9001	02-323-9003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이사)	신주섭/ (주)아이더스에프앤비	푸라닭 외2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04(등촌동, 아이더스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장성식	02-323-9001	02-323-9003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해당 없음 :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푸라닭』	
상 호	『푸라닭』○○점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
상표(서비스표)	치킨, 요리가 되다. 푸라닭 치킨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 제4017145170000호
	PURADAK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 제4017270100000호
	푸라닭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 제4017270090000호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 제4017993550000호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 제4019549650000호

5.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가.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

☞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44,296,597	30,201,643	14,094,953	163,802,908	9,491,952	7,573,016
2023년	55,422,443	34,108,908	21,313,535	140,218,251	8,781,339	7,218,581
2024년	63,061,810	40,022,394	23,039,415,	138,432,399	4,183,048	2,041,134

※ 그 근거자료는 [별첨 2]와 같습니다.

나.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6. 가맹본부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

☞ 당사의 임원은 모두 가맹사업 관련 임원이며,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은 없습니다. 가맹사업 관련 임원의 자세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재직 회사 및 직위	담당 업무
장성식	대표이사	2016.03.14 ~ 현재	㈜아이더스에프앤비 대표자	업무 총괄
서기원	부대표	2015.11.20 ~ 현재	㈜아이더스에프앤비 이사	사업부 총괄
신주섭	부대표	2020.05.12 ~ 현재	㈜아이더스에프앤비 이사	운영지원 총괄

7.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임직원 수

☞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3	-	109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월급여간이세율(A01)의 총인원에 상근 임원(3명)이 포함되어 있어 직원수에서 해당 상근 임원을 제한 나머지를 기재하였음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아이더스에프앤비	가맹사업 경영	2020.01.07(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현재	직화부엌 직화고(등록번호: 20200030)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가맹본부	㈜아이더스에프앤비	가맹사업 경영	2024.08.09(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현재	움버거앤윙스(등록번호: 20241099)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 당사의 지식재산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상표(서비스표) **푸라닭 고추마요**	29류	출원 2019.01.31. 등록 2019.11.13.	출원 제4020190017495호 등록 제4015433950000호	㈜아이더스에프앤비	2029.11.13.
	30류	출원 2019.01.31. 등록 2019.11.13.	출원 제4020190017496호 등록 제4015433960000호	㈜아이더스에프앤비	2029.11.13.
상표(서비스표) 치킨, 요리가 되다. 푸라닭 치킨	29류 30류 43류	출원 2020.11.18. 등록 2021.04.12.	출원 제4020200208434호 등록 제4017145170000호	㈜아이더스에프앤비	2031.04.12.
	디자인	출원 2020.05.28. 등록 2020.12.10.	출원 제3020200023804호 등록 제3010870940000호	㈜아이더스에프앤비	2040.05.28.
상표(서비스표) **PURADAK**	29류 30류 43류	출원 2020.11.18. 등록 2021.05.12.	출원 제4020200208433호 등록 제4017270100000호	㈜아이더스에프앤비	2031.05.12.
	9류	출원 2022.05.10. 등록 2024.01.31.	출원 제4020220086412호 등록 제4021479960000호	㈜아이더스에프앤비	2034.01.31.
	35류	출원 2022.05.10. 등록 2023.11.02.	출원 제4020220086413호 등록 제4021070130000호	㈜아이더스에프앤비	2033.11.02.
	38류	출원 2022.05.10. 등록 2023.11.02.	출원 제4020220086414호 등록 제4021070260000호	㈜아이더스에프앤비	2033.11.02.
	42류	출원 2022.05.10. 등록 2023.11.02.	출원 제4020220086415호 등록 제4021070250000호	㈜아이더스에프앤비	2033.11.02.
상표(서비스표) **푸라닭**	29류 30류 43류	출원 2020.11.18. 등록 2021.05.12.	출원 제4020200208432호 등록 제4017270090000호	㈜아이더스에프앤비	2031.05.12.
	9류	출원 2022.05.10. 등록 2024.01.31	출원 제4020220086408호 등록 제4021479920000호	㈜아이더스에프앤비	2034.01.31.
	35류	출원 2022.05.10. 등록 2023.11.02.	출원 제4020220086409호 등록 제4021070070000호	㈜아이더스에프앤비	2033.11.02.
	38류	출원 2022.05.10. 등록 2023.11.02.	출원 제4020220086410호 등록 제4021070090000호	㈜아이더스에프앤비	2033.11.02.
	42류	출원 2022.05.10. 등록 2023.11.02.	출원 제4020220086411호 등록 제4021070080000호	㈜아이더스에프앤비	2033.11.02.
상표(서비스표)	29류 30류 43류	출원 2020.05.07. 등록 2021.11.15.	출원 제4020200074855호 등록 제4017993550000호	㈜아이더스에프앤비	2031.11.15.
상표(서비스표)	29류	출원 2021.06.08. 등록 2023.04.14.	출원 제4020210117694호 등록 제4020076750000호	㈜아이더스에프앤비	2033.04.14.
	30류	출원 2021.06.08. 등록 2023.04.14.	출원 제4020210117707호 등록 제4020076760000호	㈜아이더스에프앤비	2033.04.14.
	43류	출원 2021.06.08. 등록 2022.12.30.	출원 제4020210117728호 등록 제4019549650000호	㈜아이더스에프앤비	2032.12.30.
상표(서비스표)	29류	출원 2020.10.05.	출원 제4020200175378호	㈜아이더스에프앤비	2032.01.25.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TOOWOOMBA CHICKEN		등록 2022.01.25.	등록 제4018256840000호		
	43류	출원 2020.10.05. 등록 2022.01.25.	출원 제4020200175384호 등록 제4018256750000호	㈜아이더스에프앤비	2032.01.25.
상표(서비스표) 투움바 치킨	29류	출원 2020.10.05. 등록 2022.01.25.	출원 제4020200175353호 등록 제4018256670000호	㈜아이더스에프앤비	2032.01.25.
	43류	출원 2020.10.05. 등록 2022.01.25.	출원 제4020200175367호 등록 제4018256710000호	㈜아이더스에프앤비	2032.01.25.
상표(서비스표) 푸라닭 블랙알리오치킨	29류 30류 43류	출원 2020.04.28. 등록 2021.08.26.	출원 제4020200071342호 등록 제4017682120000호	㈜아이더스에프앤비	2031.08.26.
상표(서비스표) 푸라닭 제너럴 핫 치킨	29류	출원 2020.10.21. 등록 2022.04.01.	출원 제4020200187139호 등록 제4018520110000호	㈜아이더스에프앤비	2032.04.01.
	43류	출원 2020.10.21. 등록 2022.04.01.	출원 제4020200187143호 등록 제4018520330000호	㈜아이더스에프앤비	2032.04.01.
상표(서비스표) PURADAK General hot chicken	29류	출원 2020.10.21. 등록 2022.04.01.	출원 제4020200187148호 등록 제4018520150000호	㈜아이더스에프앤비	2032.04.01.
	43류	출원 2020.10.21. 등록 2022.04.01.	출원 제4020200187150호 등록 제4018520170000호	㈜아이더스에프앤비	2032.04.01.
상표(서비스표) 콘소메이징	29류	출원 2022.05.12. 등록 2023.11.15.	출원 제4020220088910호 등록 제4021137970000호	㈜아이더스에프앤비	2033.11.15.
	30류	출원 2022.05.12. 등록 2023.11.15.	출원 제4020220088914호 등록 제4021137980000호	㈜아이더스에프앤비	2033.11.15.
	43류	출원 2022.05.12. 등록 2023.11.15.	출원 제4020220088916호 등록 제4021138000000호	㈜아이더스에프앤비	2033.11.15.
상표(서비스표) 바질페스타	29류	출원 2022.05.12. 등록 2024.02.15.	출원 제4020220088917호 등록 제4021548400000호	㈜아이더스에프앤비	2034.02.15.
	43류	출원 2022.05.12. 등록 2024.02.15.	출원 제4020220088922호 등록 제4021548430000호	㈜아이더스에프앤비	2034.02.15.
상표(서비스표) 마불로 악마	29류	출원 2023.03.08. 등록 2024.10.16.	출원 제4020230041057호 등록 제4022625960000호	㈜아이더스에프앤비	2034.10.16
	30류	출원 2023.03.08. 등록 2024.10.16.	출원 제4020230041058호 등록 제4022625970000호	㈜아이더스에프앤비	2034.10.16
	43류	출원 2023.03.08. 등록 2024.10.16.	출원 제4020230041059호 등록 제4022626000000호	㈜아이더스에프앤비	2034.10.16
상표(서비스표) 블랙알리오	29류	출원 2023.03.22. 등록 2023.08.16.	출원 제4020230050750호 등록 제4020677060000호	㈜아이더스에프앤비	2033.08.16.
상표(서비스표) 고추마요	29류	출원 2023.09.19. 등록거절 2024.03.04.	출원 제4020230171842호	㈜아이더스에프앤비	
상표(서비스표) 김미바삭	29류	출원 2023.09.19.	출원 제4020230171843호	㈜아이더스에프앤비	출원 중
	30류	출원 2023.09.19.	출원 제4020230171844호	㈜아이더스에프앤비	출원 중
	43류	출원 2023.09.19.	출원 제4020230171845호	㈜아이더스에프앤비	출원 중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상표(서비스표) **띱띱크런치**	29류	출원 2024.06.25.	출원 제4020240115632호	㈜아이더스에프앤비	출원 중
	30류	출원 2024.06.25.	출원 제4020240115633호	㈜아이더스에프앤비	출원 중

※ 귀하가 관계기관에 등록된 당사의 특허, 상표, 서비스표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위 지식재산권 중 등록 전(출원 중)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상표는 귀하가 가맹점사업자로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표권이며, 귀하는 위 상표 외에 당사가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기타 상표를 가맹계약의 범위 내에서 당사가 허락한 방식에 따라 가맹점 운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상표는 출원중으로, 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해당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Ⅲ.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푸라닭』가맹사업을 시작한 날짜 : 2015년 2월 1일

2.『푸라닭』연혁

☞『푸라닭』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이후 해당 가맹사업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나이스가이	푸라닭	신주섭	2015.02.01~2015.11.19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42길 49(신당동)
㈜피엠피코퍼레이션	푸라닭	황인섭	2015.11.20~2016.03.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울마당로3길 18, 2층 202호(합정동)
㈜피엠피코퍼레이션	푸라닭	장성식 황인섭	2016.03.14~2016.09.22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울마당로3길 18, 2층 202호(합정동)
㈜아이더스코리아	푸라닭	장성식 황인섭	2016.09.23~2017.05.15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31, 301호(방화동, 푸른빌딩)
㈜아이더스코리아	푸라닭	장성식	2017.05.16.~2024.05.08.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376, 6층(601호), 7층, 8층, 9층 (가양동, 델타빌딩)
㈜아이더스에프앤비	푸라닭	장성식	2024.05.09.~현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04(등촌동, 아이더스빌딩)

3.『푸라닭』업종

영업표지	업종	
푸라닭	대분류	소분류
	치킨	치킨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푸라닭』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729	728	1	715	714	1	715	715	-
서울	115	114	1	109	108	1	105	105	-
부산	48	48	-	47	47	-	48	48	-
대구	26	26	-	27	27	-	30	30	-
인천	42	42	-	42	42	-	42	42	-
광주	24	24	-	25	25	-	24	24	-
대전	26	26	-	26	26	-	23	23	-
울산	17	17	-	17	17	-	16	16	-
세종	5	5	-	5	5	-	7	7	-
경기	195	195	-	185	185	-	187	187	-
강원	27	27	-	26	26	-	26	26	-
충북	22	22	-	22	22	-	21	21	-
충남	33	33	-	34	34	-	35	35	-

전북	25	25	-	25	25	-	23	23	-
전남	25	25	-	26	26	-	27	27	-
경북	28	28	-	28	28	-	29	29	-
경남	51	51	-	51	51	-	51	51	-
제주	20	20	-	20	20	-	21	21	-

5. 바로 전 3년간『푸라닭』가맹점 수

☞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가맹점 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2년	704	31	3	4	123	728
2023년	728	15	4	25	132	714
2024년	714	28	10	17	120	715

6.『푸라닭』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당사가『푸라닭』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2.12.31.	2023.12.31.	2024.12.31.
가맹본부	㈜아이더스에프앤비	직화부엌 직화고	20200030	떡볶이	-/-	-/-	-/-
가맹본부	㈜아이더스에프앤비	움버거앤윙스	20241099	버거	-/-	-/1	16/1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지역	2024년 말 가맹점수	산출대상 가맹점 수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²당	상한	면적 3.3m²당	하한	면적 3.3m²당
전체	715	703	450,859	24,413				
서울	105	103	568,586	36,499	1,611,777	119,080	172,815	10,756
부산	48	48	405,120	24,379	772,036	82,560	157,186	8,518
대구	30	30	420,728	19,433	730,778	57,839	118,851	3,070
인천	42	42	503,291	29,088	1,045,580	72,609	184,003	9,259
광주	24	24	406,678	17,704	612,980	46,501	240,279	7,946
대전	23	23	442,917	20,467	726,290	119,722	219,677	8,424
울산	16	16	409,548	26,234	811,852	58,216	199,774	12,686
세종	7	7	454,323	22,938	80,938	41,333	203,976	8,745
경기	187	182	472,289	28,062	1,186,870	78,337	135,187	7,630
강원	26	26	367,800	18,713	611,183	60,392	156,505	8,740
충북	21	21	393,195	18,897	859,193	33,906	192,414	6,901
충남	35	34	412,321	22,731	716.622	57,260	187,600	11,809
전북	23	23	391,045	17,773	571,749	37,885	244,346	9,422
전남	27	26	426,561	16,317	762,774	41,926	216,853	5,336

경북	29	27	332,718	18,881	637,334	50,053	150,946	9,564
경남	51	51	363,584	19,711	699,942	90,306	136,003	7,975
제주	21	20	363,929	13,611	704,733	45,422	180,139	5,033

☞[푸라닭] 가맹점사업자 한명이 2024년에 올린 연간 평균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위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장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돤됩니다.

☞위 수치는 가맹점별 포스데이터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당사의 가맹점 중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1년 미만 가맹점의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습니다. 다만, 6개월 미만 영업한 가맹점의 데이터는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표에서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수 715개가 아닌 실제 (703)개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푸라닭』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연도	영업 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715	44.6개월

9. 가맹지역본부(지사)의 일반 정보

☞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 및 가맹지역사무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지사	경남지역 (울산 포함)	㈜아이더스에프앤비 경남/ 푸라닭 경남지사	경상남도 진주시 대신로231번길 8, 2층 (상대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 수**
		성중호	055-763-2492		67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3.06.22.~2025.06.21	○	○	X
구분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지사	제주지역	아이더스에프앤비 제주/ 푸라닭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천단동3길 11-1, 103호 (아라일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 수**
		문경배	064-722-5644		21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3.08.09.~2025.08.08	○	○	X
구분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지사	강원지역	아이더스에프앤비 강원지사/ 푸라닭 강원지사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6, 703호 (서원주타워)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 수**
		김형수	033-747-9207		26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0.03.01~계속	○	○	X

10. 바로 전 사업연도의 가맹본부의 연간 광고비 및 판촉비

☞ 당사에서 2024년에 『푸라닭』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	연중	17,601,524	(비공개)	(비공개)	
광고선전비	(비공개)	(비공개)	17,189,668	(비공개)	(비공개)	
판매촉진비	(비공개)	(비공개)	411,856	(비공개)	(비공개)	

1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기관의 상호, 예치업무 담당 부서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 해당 없음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내역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비 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주)	
보험계약자	㈜아이더스에프앤비	가맹본부
피보험인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평균 5개월 소요

Ⅳ.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회의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조치대상	의결번호 (사건번호)	위반법령	위반내용 (위반법조문)	조치일자	조치내용
(주)아이더스 에프앤비	의결 제2025-90호 (2023가조1879)	가맹사업법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 제2호 나목)	2025.5.7	시정명령,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

2.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1) 다만,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해당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재결절차를 거치고 있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당 조치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법위반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Ⅴ.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기 이전의 부담

귀하가『푸라닭』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각종 인허가 비용, 기타 가맹점사업자 선택 구입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일부 원부재료 공급품목 외 시설, 장비, 기타 구입 내역 및 업체선정은 가맹점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가맹사업의 독창성과 통일성이 유지되도록 당사가 제시하는 기준에 맞추어 설계, 시공하여야 하며, 당사가 정하는 품질기준의 제품과 지정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가. 최초 가맹금

☞ 최초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 영업권과 영업표지의 사용권한을 부여받고, 개점지원 및 개점을 위한 신규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구 분	금액 (부가세포함)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 고
총계	16,500,000원				
가맹비	11,000,000원	계약체결 시	- 개점 전까지 계약 해지될 경우. 단 이 경우에도 기 인도 또는 제공된 정보제공에 대한 대가 기타 개점 지원을 위해 이미 소요된 비용은 소멸되며 반환되지 않음. - 계약기간 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가입비를 잔여 계약기간 만큼 일할계산하여 반환함	개점 후 가맹본부의 귀책사유 없이 해지될 경우	-가입비 : 가맹비의 20% -개점지원비 : 개점 및 운영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노하우 전수 및 운영교육, 개점 지원 (가맹비의 80%)
교육비	5,500,000원	계약체결 시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개점 전 이론 및 조리 교육 식사제공

나. 보증금, 담보목적물 등 계약 종료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되는 대가

☞ 해당 없음 : 당사는 보증금, 담보목적물 등을 받지 않습니다.

다.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법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귀하는 아래 가맹금을 예치하실 필요 없이 당사에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 분	금액(부가세포함)
가맹비	11,000,000원
교육비	5,500,000원
합계	16,500,000원

라. 최초 가맹금 외에 필수설비, 정착물, 인테리어 비용, 최초로 공급되는 상품의 비용 등 그 밖의 필요비용

☞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m²당 금액	지급 기한	비고
합계		**68,080,000**	-		33㎡ 기준
인테리어	별첨1_1. 거래상대방 참고	18,800,000	1,880,000	협의하여 정함	
간판 등		8,800,000	해당없음	협의하여 정함	기본사이즈(6m) 기준 매장의 전면크기,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주방 설비		12,100,000	해당없음	협의하여 정함	점포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
주방 및 홀 집기		2,200,000	해당없음	협의하여 정함	
오븐		20,240,000	해당없음	협의하여 정함	10단 콤비오븐 기준
테이블		1,100,000	해당없음	협의하여 정함	1조(4인석 테이블1, 의자4) 당 550,000원
POS		1,540,000	해당없음	협의하여 정함	
초도물품		3,300,000	해당없음		점포 및 오픈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매장의 크기, 구조, 점주 선택사양, 구입품목, 구입수량, 설치 기간을 초과하여 생기는 추가 비용 등에 따라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시공내역 및 지급대상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적당 금액'은 귀하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시된 것으로서, 실제 금액이 위 면적당 금액에 해당 매장의 면적을 곱한 금액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 그 밖의 비용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관리감독비 : 귀하는 자체 시공할 수 있으나 인테리어, 간판, 주방설비 등은 가맹사업 동일성과 독창성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당사가 정한 사양에 따라 당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관리 및 감독 하에 시공하여야 합니다. 이에 귀하는 이의 비용으로 다음과 같은 비용을 착공전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부가세포함)

매장 형태	구 분	금 액
배달 EXPRESS (15평 미만)	제주, 강원 제외 전 지역	3,300,000
	제주, 강원 지역	4,400,000
일반 매장 (15평 이상)	제주, 강원 제외 전체 지역	4,400,000
	제주, 강원 지역	5,500,000

2) 필수 구입 내역 : 주방설비, 주방 및 홀 집기, 오븐, 테이블, POS 일체, 초도물품 등은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를 위해서 당사 및 당사의 지정업체에서 구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주방설비, 주방 및 홀 집기, 오븐, 테이블의 경우에 한해 당사의 승인을 얻어 귀하가 직접 구입할 수 있으나, 귀하는 당사가 정한 모델 및 동일한 규격, 사양으로 당사의 품질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한, 브랜드 로고가 인쇄되어야 하는 물품을 직접 구입할 경우, 당사가 제공하는 브랜드 로고를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그 밖의 영업신고 및 교육, 사업자 등록발급, 전화 개설, TV 시청 등에 따른 비용은 귀하가 자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위의 모든 비용은 시공 및 구입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업체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시공한 경우, 반환은 해당 계약에 따르며, 당사를 통해 시공 또는 구입한 경우,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공급하지 아니 한 때에 한하여 당사 또는 귀하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반환할 수 있습니다.

마.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당사 조언 요청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요청이 있는 경우	담당자 배정→가맹희망자 선정 사업장 방문→검토 후 본사와 협의 및 승인받아 가맹희망자 최종 결정
	요청이 없는 경우	가맹희망자 입지 도출→가맹희망자 최종 결정

※ 점포선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입지 선정에 따른 최종결정은 반드시 가맹희망자가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점포의 하자, 권리의 하자 등을 이유로 당사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한편, 입지선정의 지연으로 인해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당사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바.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만 20세 미만,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거나),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종업원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의 동의서를 필요로 합니다.

사.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정착물 등의 물품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위 내역 중 별도시공 내역은 귀하가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품목은 매장 규모 및 메뉴 등에 따라서 물품 내역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자체 선정한 업체를 통해 조달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별도 제시하는 품질, 규격, 수량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가. 상표사용료, 리스료, 광고료, 교육훈련비, 간판류 임차료, 점포환경개선 비용, 재고관리 및 회계처리 비용,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을 포함한 운영시스템 유지 비용 등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그 관계자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대가의 내역과 그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 귀하는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등 정기지급금 (로열티)			해당 없음				
리스료			해당 없음				
광고분담금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VI-8-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IX-2.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내역 참조	교육실시 전	교육개시 전	교육훈련비로 비용소요(교육개시 후)	
간판류 임차료			해당 없음				
점포환경개선 비용	가맹본부 권장업체 시공	시공업체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에 따름	Ⅷ-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가맹점사업자 선정업체 시공	시공업체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에 따름	Ⅷ-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관리감독 업체	관리감독비 (13쪽 참고)	착공 전			
재고관리비용			해당 없음				
회계처리비용			해당 없음				
각종 설비, 테이블 등의 교체·보수 비용		가맹본부 또는 권장업체 또는 가맹점사업자 선정업체	개별산정	교체·보수 업무 개시 전	교체·보수 전 계약취소	교체·보수 후 반환 불가	
POS 프로그램 사용료			월 22,000원	명세서 명시일까지	반환 안됨	관리비로 비용소요	
대표번호 사용료		가맹본부	월 22,000원	당월 말일까지	반환 안됨	관리비로 비용소요	물품대금 입금 시 청구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12%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당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전화링고음의 경우 (주)KT 외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업체 선택이 가능합니다.

나.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 가맹점사업자가 구입요구품목(필수,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의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차액가맹금은 추정치이며 가맹본부의 순이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이익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Ⅰ-5-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금액에는 부동산 임차료, 가맹본부 조직 관리 및 운영, R&D개발비용, 각종 세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직전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자료는 계육 매입가 평균치로 산정하였으므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재고관리,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를 감독하는 내역

☞ 당사는 귀하의 재고관리에 및 매출액 현황 및 매장관리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가맹점 재고 현황	슈퍼바이저 방문시 또는 당사 요청시	매월 말일 기준 서면보고
회계처리	가맹점 매출액 현황	슈퍼바이저 방문시 또는 당사 요청시	매월 말일 기준 서면보고
매장관리	· 제반 법령과 Q.S.C. 준수 여부 점검 및 품질관리지도 · 매장운영상황 분석 및 경영지도 · 가맹점 관리기준(운영관리지침 기타 매뉴얼) 준수 여부 점검	정기/수시 슈퍼바이저 방문시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가.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체결 당시 다른 가맹점사업자에 준하는 조건으로 계약 종료일 전까지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30일 전에 해당 사실을 알립니다. 귀하는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일을 기준으로 20일 이전에 당사에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양수한 사업자와의 계약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와 체결한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갑"에게 지급한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선급금의 성질을 갖는 가맹금이 있는 경우 미경과 잔여계약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가한 지식재산권이 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당사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귀하에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귀하가 손해를 입은 경우 당사는 이를 배상합니다.

3)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 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조건은 귀하가 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에 당사 또는 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귀하는 각자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귀하는『푸라닭』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 예정일 [2]개월 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가맹점운영권을 양수한 자에게는 아래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단위: 원, 부가세포함)

구 분	금액	비 고
개점활동 지원비	6,600,000원	개점 및 운영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노하우 전수 및 운영 교육, 개점 지원
교육비	5,500,000원	개점 전 이론 및 조리 교육, 식사 제공

양수인의 범위는 상속을 제외한 직계 존·비속간의 승계도 포함됩니다.

☞☞ **승인을 얻은 영업양수인은 당사와 잔여 계약기간으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업양수인이 잔여 계약기간 대신 완전한 계약기간을 요청하는 경우, 영업양수인은 당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 준하는 조건으로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최초가맹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귀하는 당사가 영업양수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 기간만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한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귀하는 계약 만료 및 해지로 종료하는 경우 기한 내에 당사가 정한 종료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종료 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지연손해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① 귀하는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경우,『푸라닭』시스템 및 식단, 조리법, 운영방법, Know-how 등『푸라닭』의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지적재산권과 간판, 휘장, 로고 등『푸라닭』에 관한 일체의 영업표지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하고, 귀하의 비용으로 7일 이내에 귀하의 모든 물건으로부터 위 영업표지 일체를 철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② 귀하가 제1항에 규정된 영업표지의 철거의무 기간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체기간에 대하여 면적당(가맹 계약에 명시한 가맹점면적) 330(부가세포함)원씩 즉, [점포면적(㎡)X지체일수X330원]으로 산출한 금액을 그 지연손해금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경우, 귀하는『푸라닭』가맹점이라는 것을 공중에게 직・간접적으로 표시할 수 없으며, 당사가 제공한 모든 매뉴얼 및 양식, 보고서, 서신 운영파일 등 점포의 운영에 관련된 자료와 문서를 당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련된 어떠한 사본이나 기록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④ 귀하는 계약의 기간 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하는 경우,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에서 공급된 물품 중 유통기간 이내, 포장을 개봉하지 않은 물품 등의 완전물에 한하여 당사에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당사는 공급가격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반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⑤ 귀하는 계약의 기간 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하는 즉시,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한국통신, 114서비스 등에『푸라닭』의 가맹점으로 등록한 전화번호 명의를 해지·변경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고객에게 혼란을 주거나,『푸라닭』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유·무형의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그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VI.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푸라닭』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 당사가 귀하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필수) 또는 권장하는 거래대상물의 품목은 (별첨1_1. 구입요구품목의 종류 및 차액가맹금 수취여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신제품 출시, 경영환경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별첨 1_1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품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협의절차를 거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 당사의 직전 사업연도 주요품목별 공급가격은 (별첨1_2. 주요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귀하가 『푸라닭』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직전년도 『푸라닭』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당사가 직전년도 『푸라닭』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및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을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

가.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귀하는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가 지정한 상품 ·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아래> 다.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판매상품(메뉴)명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가 지정한 품목만 판매 또는 배포(디자인/홍보물 포함) 하여야 함	1차 : 1차 서면 시정조치 2차 : 2차 서면 시정조치 3차 : 물품공급 중단 또는 가맹계약 해지	당사가 지정하는 품목은 신상품 개발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당사가 지정한 상품 · 용역 이외의 품목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아래 '다.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관련 표에 기재된 판매상품(메뉴) 이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신제품 출시, 경쟁업체의 출현, 시장변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 메뉴의 변경 또는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 가맹본부가 지정한 메뉴를 판매해야 합니다.

나.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거래상대방에 대해 상품 · 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 거래상대방	제한받는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경쟁업체	당사가 지정한 상품·용역 및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제한된 거래상대방에게 무상지원 공급 및 판매 금지	1차 : 1차 서면 시정조치 2차 : 2차 서면 시정조치 3차 : 물품공급 중단 또는 가맹계약 해지
물품공급이 중단된 다른 가맹점사업자			
가맹점 이외의 유통채널 고객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과 용역에 대해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 및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가맹점의 경영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권장가격 제도를 운용합니다. 권장가격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권장가격은 시장환경, 물가변동 및 당사의 영업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권장가격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만약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2주 전에 서면으로 변경 의사를 "가맹본부"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합니다.

(2025년 4월 기준)

판매 상품명(메뉴명)	권장가격 (단위 : 원)	판매 상품명(메뉴명)	권장가격 (단위 : 원)
씬 후라이드	19,900	김미바삭 윙콤보	24,900
블랙알리오	21,900	치즈인이유 윙콤보	25,900
달콤양념 치킨	21,900	블랙마불로 윙콤보	26,900
매드갈릭 치킨	21,900	블랙마요 윙콤보	25,900
고추마요 치킨	21,900	블랙투움바 윙콤보	26,900
마불로 악마	22,900	마불로 악마에 반하다	32,300
파불로 치킨	20,900	블랙알리오에 반하다	31,300
투움바 치킨	22,900	푸라닭에 반하다	30,300
제너럴 핫 치킨	20,900	파불로에 반하다	31,300
콘소메이징	21,900	3 색볼 (3 구, 6 구, 9 구)	3,400 / 5,800 / 8,500
김미바삭	21,900	블랙치즈볼	4,900
띵띵 크런치	22,900	빅치즈스틱 (1 개, 2 개)	3,000 / 5,000
치즈인이유	22,900	기름떡볶이 (달콤)	4,500
블랙마불로	24,900	코울슬로	2,500
블랙마요	23,900	레귤러컷	5,900
블랙투움바	24,900	기름떡볶이 (레드)	4,500
순살 씬 후라이드	22,900	후라잉 닭발	14,900
순살 블랙알리오	24,900	꼬친 새우	3,500
순살 달콤양념	24,900	크림치즈볼	4,900
순살 매드갈릭	24,900	유미네 떡볶이 (오리지널)	5,500
순살 고추마요	24,900	베이컨 감자볼	6,500
순살 마불로 악마	25,900	지파이	4,900
순살 파불로	23,900	모둠감자	13,000
순살 투움바	25,900	기름떡볶이 (투움바)	5,500
순살 제너럴 핫	23,900	기름떡볶이 (블랙)	4,500
순살 콘소메이징	24,900	P-피자 파불고기	15,900
순살 김미바삭	24,900	P-피자 치킨콘마요	15,900
순살 띵띵 크런치	25,900	P-피자 쉬림프베이컨	15,900
순살 치즈인이유	25,900	텐더치바로우(달콤)	9,900
순살 블랙마불로	26,900	텐더치바로우(갈릭)	9,900
순살 블랙마요	25,900	블랙치즈스틱	3,900
순살 블랙투움바	26,900	텐더치바로우(악마)	9,900
씬 후라이드 윙콤보	22,900	유미네 떡볶이 (우삼겹)	6,500
블랙 윙콤보	24,900	타코볼	2,900
달콤양념 윙콤보	24,900	일품 백합탕	16,900
매드갈릭 윙콤보	24,900	일품 어묵탕	16,900
파불로 윙콤보	23,900	매콤 국물닭발	16,900
마불로 악마 윙콤보	25,900	수제 킬바사 소시지	17,900
고추마요 윙콤보	24,900	3 색 닭꼬치	16,900
투움바 윙콤보	25,900	고추마요 먹태&믹스넛	15,900
제너럴 핫 윙콤보	23,900	땡큐베리황도	12,900

판매 상품명(메뉴명)	권장가격 (단위 : 원)	판매 상품명(메뉴명)	권장가격 (단위 : 원)
콘소메이징 윙콤보	24,900		
후라잉 진미채	14,900		
반건조오징어	12,000		
쥐포구이	12,000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가.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입점 제한 지역)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오븐 및 후라이드 치킨 전문점	푸라닭	해당없음

나.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 당사는 영업지역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특수상권일 경우	특수상권 내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입점예정지를 중심으로 반경 500m~1km 범위 내에서 행정구역, 인구수, 도로나 공원 등에 의한 통행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 정함. 단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함 1. 입점예정지에 특수상권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특수상권은 영업지역에서 제외됨 2. 인접지라 할지라도 가맹점간 왕복 4차선 도로가 존재하거나 공원 등에 의해 통행이 곤란할 경우 별개의 영업지역으로 설정될 수 있음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특수상권이라 함은 백화점, 대형마트/쇼핑몰, 시장, 지하상가, 지하철역사 내 상가, 종합병원, 공항, 호텔, 각종 실내외 스포츠시설(야구장, 축구장, 골프장 등), 군부대, 리조트, 테마파크, 공원, 학교, 휴게소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을 말합니다.

다.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보장받은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푸라닭'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영업지역 침해에 따라 특정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원·부재료는 제외)을 아래와 같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푸라닭]가맹점과 구분되는 점
당사의 가맹사업 브랜드	움 버거 앤 윙스	감자튀김, 콘소메 시즈닝 감자, 블랙 치즈스틱, 지파이	[푸라닭]간판을 사용하고 있지 않음

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원·부재료는 제외)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 영업표지의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제3자가 유통상품을 제조 및 판매할 수는 있습니다.

* 향후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필요로 다른 유통채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사.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귀하가 배달앱을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① 가맹점사업자는 배달앱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계약서 제8조 제1항 상의 가맹점 주소지 및 영업지역을 영업거점으로 하여야 합니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배달앱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③ 가맹본부는 배달앱 영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계약서 제14조 제6항에 따라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합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가.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②
2024	99.8	0.2	0	0

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 및 수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

가. 가맹계약의 기간 및 계약 갱신 기간

☞『푸라닭』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3]년입니다. 다만,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재계약 기간은 갱신일로부터 만 [2]년이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 갱신 이행 사항
1. 귀하는 '가맹본부'의 시스템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시스템으로 교체 또는 수리하여야 하고, '가맹본부'로부터 매장의 노후 설비의 보수, 교체를 통지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귀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상품대금, 대여금 및 기타비용 등 모든 금융상의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여야 합니다.
3. 계약 갱신 시 귀하와 '가맹본부'는 당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으로 새로운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 당사는 귀하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가맹사업법」상 갱신요구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갱신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절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정당한 계약 갱신 거절 사유
1. 가맹 계약상의 가맹금 등 금전적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경우
4.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5.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6.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귀하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습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당사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당사가 귀하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귀하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C, 아니오→D	
⑦ 당사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귀하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라.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합의해지, 일반해지, 즉시해지 등 3가지입니다. 다만, 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에 계약해지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귀하가 운영하는 점포의 과거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정하되, 산정기준과 각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직전 3개월간의 "가맹본부" 혹은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매입한 월평균 매입액 X 10% X 잔여기간(월)] + [(직전 3개월간 월 평균 광고비 + 대표번호이용료) X 잔여기간(월)]

***과거 영업실적 기준인 직전 3개월에 해당되는 기간동안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전 3개월 이전에 정상적으로 운영한 月["가맹점사업자"가 1개월에 15일(영업시간을 준수한**

일자) 이상 "가맹본부" 혹은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주문한 상품 또는 자재로 영업한 月]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월평균 매입액으로 산정합니다.

(1) 합의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귀하가 계약기간 종료 전 당사와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해지의사를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와의 합의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2) 일반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귀하에게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가맹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맹본부가 그 이행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동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귀하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으로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일반해지 사유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해지 사유

1. 가격표 · 메뉴판 · 원산지표시 · 영양성분 분석표 등 "가맹본부"의 운영규칙이나 관계법령에 의한 표시나 게시, 부착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대금지급의무 ('물품 등'의 대금, 광고비 등)를 위반할 경우(가맹지역본부 관리매장 포함)

3. 교육과 관련한 다음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제 9 조 [교육 및 훈련]에서 정한 교육을 불참하거나 수료하지 못한 경우
   나. 제 11 조 [시정조치 등] 제 2항에 의하여 "지역담당자"의 교육입소명령을 받고도 불참하거나 수료하지 못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은 Q.S.C.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가맹점사업자"가 아래 표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하여 "가맹본부"로부터 제 11 조에서 정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점포 외부	1. 간판 청결 (간판 점등 유무 및 청소 상태 점검)
	2. 전면 유리창 청결 (청결 상태 점검)
개인 위생	3. 점포 외부 및 오토바이의 청결 (매장 앞, 오토바이와 배달박스 상태 청결 등)
	4. 유니폼 착용 여부 및 개인 위생상태(근무자 착용 여부, 유니폼 및 개인위생 점검)
	5. 건강진단 결과서(보건증) 비치 및 갱신 (매장 내 비치 여부, 적시 갱신 여부)
점포내부 및 홀관리	6. 매장 내 불필요 품목 적재 유무 (사용 불가능한 전단, 기타 자재 등)
	7. 카운터 및 쇼케이스의 정리 상태
	8. 바닥, 벽면, 천장, 테이블, 의자 관리 상태
주방 관리	9. 오븐기, 튀김기, 냉장고, 냉동고 내·외부 청결 및 정리 상태
	10. 주방 청결 상태 (오븐, 튀김기, 후드 및 닥트, 주방기기, 작업대, 바닥 등)
	11. 원, 부재료 관리 (유통기한 준수 및 보관 상태 점검)
	12. 쓰레기 및 폐유 관리 (쓰레기통 및 폐유통 관리 상태)
	13. 음식물 쓰레기 및 쓰레기통 관리 (뚜껑, 악취 등)
	14. 그리드 코팅 상태 및 위생상태
	15. 튀김유 신선도(산도측정지 기준 2.5가 이하)

   나.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필수품목 사입 또는 다른 가맹점으로부터의 위장매입 등 정상적인 구입과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
   다.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공급받은 물품 등을 타인에게 제공, 판매, 대여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제공, 판매, 대여 받은 경우
   라. "가맹본부"의 사전승인이 없거나 승인하지 않은 상품을 타인에게 제공, 판매, 대여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제공, 판매, 대여 받은 경우
   마. "가맹본부"가 정한 복장 및 개인위생사항 (면도 불량, 슬리퍼 착용 금지 등)을 준수하지 않아 이의 시정을 요구받았으나 시정하지 않은 경우
   바.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정한 운영규칙 등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소비자 클레임(품질, 서비스, 기타 점포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한 다음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소비자 클레임(품질, 서비스, 기타 점포운영 등에 관한 클레임 등) 발생에 대하여 "가맹본부"로부터의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상품권사용고객, "가맹본부"와 제휴계약을 맺은 업체 등의 할인 고객에 대하여 대고객서비스에 있어서 차등 대우를 하거나, 상품권 수령거부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소비자클레임으로 인한 「푸라닭」의 브랜드 이미지 등을 저하시킨 경우 라.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6. 판매촉진활동과 관련한 다음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광고물 제작시 "가맹본부"의 BI나 영업표지를 임의로 변경하여 제작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의 시정을 요구받았으나 시정하지 않은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향상을 위해 "가맹본부"가 제공한 홍보포스터 등 부착물을 규정된 장소 및 시기에 부착하지 않은 경우
7. 가맹점포 운영과 관련한 다음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이의 시정을 요구받았으나 시정하지 않은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POS에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허위정보를 입력한 경우 다. "가맹본부"의 사전승인 없이 간판, 인테리어, 배달박스 등 영업표지를 임의로 변경하여 "가맹본부"의 브랜드가치와 영업의 통일성에 침해를 가져오는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기타 "가맹본부"의 경영지도, 운영규칙을 준수하지 않아 "가맹본부"의 업무에 중대한 장해를 초래한 경우
9. 입증되지 않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와 다른 가맹점간의 거래에 있어서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 "가맹본부"가 지정한 가맹점 상호, 명칭 등의 영업표지가 아닌 다른 가맹점의 상호 등과 오인, 혼동케 할 수 있는 상호·명칭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거나 안내(광고, 전화 등 포함)하여 "가맹 본부" 또는 인근 가맹점 등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1. 기타 식품위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 위반, 본 계약상 의무 및 사전 합의사항, 기타 "가맹본부"가 사전에 POS 또는 "지역담당자"를 통하여 공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정당한 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3.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및 가맹점 운영 규칙을 위반하거나 정상적인 가맹점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당사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5일 전 서면 또는 주문 프로그램에 사전 예고한 후 상품공급을 중단하고 있으며, 상품 공급 중단 사유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공급 중단 사유
1. 귀하가 상품 . 자재의 대금을 연체한 경우(가맹지역본부 관리매장 포함)
2. 귀하가 당사의 교육 및 경영지도나 경영지침을 2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3. 귀하가 당사와 협의 없이 점포관리 업무를 5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4. 귀하가 당사와 협의한 판매촉진 활동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귀하가 당사의 점포환경개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6.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여 계약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당사는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 즉시 상품공급 중단하고 있습니다.

(3) 즉시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귀하에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 최고 절차 없이 본 계약이 즉시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 해지 사유
1. 귀하에게 파산 등의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귀하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되어 지급 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귀하가 가맹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귀하가「가맹사업법」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가맹사업법」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귀하가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연속하여 7일 이상 중단(점포이전예정일 이후 7일 이상 개점하지 않는 경우 포함)한 경우

마.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중 조건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 귀하와 상호 합의하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

가.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및 양도, 상속에 필요한 절차

☞ 당사는 환매제도는 운영하지 않지만, 양도 및 상속의 경우 당사의 승인 후 가맹점운영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운영권 이전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여부(조건)	이전 범위	가능시 필요한 절차
환매	불가능	-	환매제도 운영 안함
양도	승인 후 가능	가맹점운영권 등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

		모든 권리의무	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 → **승인시 양도인이 양도양수 시 발생하는 업무 비용 당사 입금 → 영업양수인과 가맹본부의 잔여기간에 따른 양수도 계약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에 준하는 조건으로 신규 가맹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상속	승인 후 가능	가맹점운영권 등 모든 권리 의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승계의사 통지→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 시 상속인과 가맹본부와 잔여기간에 대한 가맹점운영권 이전 계약 체결→가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 단, 양도 및 양수에 관련된 부동산 및 권리문제에 대해서는 당사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됩니다.

나. 가맹점운영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지와 그에 필요한 조건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대리운영은 직계존비속 및 가족의 범위에 한하여 당사의 승인 후 가능합니다. 다만, 위탁경영은 필요시 본사의 사전 승인 후 가능합니다.

구분	가능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대리경영	승인 후 가능 (직계존비속 및 가족의 범위에 한함)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 . 의무	가맹점사업자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대리인 또는 위탁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 → 승인 시 대리경영
위탁경영	승인 후 가능	합의 후 결정	

다. 가맹점 사업자의 경업금지 범위

☞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당사의 허락 없이 동일 지역 내에서 자기 또는 제 3자의 명의로 당사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경업을 하기 위해서는 1개월 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닭을 이용한 치킨을 매장내 판매 또는 배달 점	가맹점사업자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승인 요청→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허가 여부 통지→완료

라.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등의 제한에 대한 내용

☞ 당사는『푸라닭』의 영업시간과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2:00 ~ 24:00	연중무휴 (휴업 희망 시 3일전 승인요청)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3일 이상 휴업 하는 경우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함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요청할 경우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는 협의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가맹점사업자가 고용하도록 권장되는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영업장에서 근무해야 하는지 여부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의 종업원 수를 매장의 매출규모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 형태는 귀하가 직접 매장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 실매출	최소 운영 인원
1,500만원 미만	2
1,500만원 ~ 2,100만원	3
2,100만원 ~ 2,800만원	4
2,800만원 ~ 3,400만원	5
3,400만원 ~ 4,000만원	6
4,000만원 이상	7

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을 관리・감독하는지와 관리・감독하는 항목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당사의 매뉴얼과 세부운영규칙의 준수상태, 위생상태, 각종 설비 관리상태, 원・부자재 관리상태, 서비스 실태, 기타 점포의 원활한 운영에 관련된 사항 등 귀하의 점포경영 및 운영상태 전반	담당자 매장 방문 → 관리내역점검 → 상담일지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월 1회 이상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광고 및 판촉 활동

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 당사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 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광고 성격</th><th colspan="2">부담비율</th><th rowspan="2">분담 절차</th><th rowspan="2">가맹점사업자간
분담기준</th></tr>
<tr><th>본사부담</th><th>가맹점부담</th></tr>
<tr><td rowspan="2">광고
행사</td><td>상품광고</td><td colspan="2">가맹사업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사전약정서 체결 또는 동의절차 시 행사별로 분담비율 안내</td><td>광고 실시 전 계획안 공지→가맹점사업자 50% 이상 동의→ 가맹점의 행사 참여</td><td rowspan="2">-</td></tr>
<tr><td>가맹점
모집광고</td><td>전액부담</td><td>없음</td><td>-</td></tr>
<tr><td>판촉
행사</td><td>판촉행사</td><td colspan="2">가맹사업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사전약정서 체결 또는 동의절차 시 행사별로 분담비율 안내</td><td>판촉행사 실시 전 계획안 공지
(1) 가맹점사업자 70% 이상 동의 시→ 전체 가맹점의 행사 참여
(2) 가맹점사업자 70% 미만 동의 시→ 동의한 가맹점만 행사 참여</td><td>-</td></tr>
<tr><td>전자
상품권</td><td>모바일상품권
(금액권,
제품교환권)</td><td colspan="2">발행 및 정산에 따른 수수료의 일부를 별도 합의에 따라 분담함</td><td></td><td></td></tr>
</table>

※별도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광고 및 판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동의비율이 충족되더라도 당사의 사정상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별개로 광고 및 판촉을 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 귀하는 귀하의 비용으로 개별적으로 자기 지역 내에서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영업표지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가. 귀하는 계약과정 및 점포의 경영상 알게 된 당사의 영업상 비밀을 계약기간의 전 . 후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나. 귀하는 항상 매뉴얼 및 점포운영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동의 또는 승낙 없이 매뉴얼이나 기타 교육 및 세미나자료, 영업 관련 편람 등을 인쇄 또는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0.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① 계약해지에 책임이 있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약금을 지급하되 그 위약금은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점포의 과거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직전 3개월간 "가맹본부" 혹은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매입한 월평균 매입액 X 10% X 잔여기간(월)] + [(직전 3개월간 월 평균 광고비 + 대표번호이용료) X 잔여기간(월)]

② 전항의 점포 과거 영업실적 기준인 직전 3개월에 해당되는 기간동안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전 3개월 이전에 정상적으로 운영한 月["가맹점사업자"가 1개월에 15일(영업시간을 준수한 일자) 이상 "가맹본부" 혹은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주문한 상품 또는 자재로 영업한 月]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월평균 매입액으로 산정합니다.

③ 귀하는 당사 또는 당사의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임원이라 함은, 법인 등기부와 정보공개서에 임원으로 기재된 자를 뜻합니다.

④ 귀하는 다음 각 항의 경우 당사에게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핵심 원재료(계육, 소스, 파우더 등 필수 공급품목) 사입 적발시 전월 매출액의 5%
2) 부정적인 행위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어 다른 가맹점 영업에도 피해를 줄 경우 전월 매출액의 5%
3) 원산지표시법 등 관련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하여 언론 보도시 해당 전월 매출액의 5%
4) 포스 허위 입력의 경우 전월(허위 입력한 월 기준) 매출액의 5%
5) 상기 1항, 2항, 3항은 가맹점에 설치된 포스매출을 기준을 산정합니다.

Ⅶ.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계약 체결을 위한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개시까지 필요한 절차, 각 절차에 걸리는 기간, 비용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을 위한 상담 협의 과정에서부터 실제 가맹점이 영업을 개시할 때 까지 필요한 절차 및 기간과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33㎡(10평) 기준 / 당사 시공 시	약 [45]일 내외	Ⅴ.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가~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및 상담 - 담당자 배정	D-45(1일)	
사업설명 및 상담	- 가맹희망자 상담	D-44(1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 희망지역 및 입지 검토 - 희망지역 입지 타당성 분석 및 선정	D-37~43(7일)	
최종협의	- 임대차 계약 체결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D-36(1일)	
점포 실측 및 설계	- 인테리어 실측 및 도면 제공 - 인테리어, 간판, 주방 등시공비용 산출 - 시공 계약 체결	D-29~35(7일)	
각종 공사	- 인테리어 시공 - 간판 시공 - 주방 시공 - 각종 인허가 취득	D-8~28(21일)	
예상매출 관련 정보 제공	-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D-35~21(15일)	
가맹계약체결	- 가맹계약 체결	D-20(1일)	
교육실시	- 교육실시	D-23~27(5일)	
개점준비마무리	- 공사 최종 점검 - 초도물품 입고 - 오픈홍보물 입고 및 오픈준비 체크	D-1~7(7일)	
개점	- 가맹점 개점 및 영업 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매장의 규모 및 공사 일정, 인허가 일정 등으로 인해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업일정 순서는 가맹본부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방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경우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No.	방법	비고
1	전문가의 자문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습니다.
2	가맹본부 제출	가맹본부에게 자문확인서를 제출합니다.
3	가맹계약 체결	귀하는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 수령 후 7일이 지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가맹계약 체결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해결 절차

☞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사와 귀하는 가맹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나.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전항의 규정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맹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당사 또는 귀하의 주소지나 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Ⅷ.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 사유	1)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 항목	1) 간판교체 비용 2) 인테리어공사비용(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 비율	1)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2)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 절차	1)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3) 분할지급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지급 -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 기준	1) 점포환경 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점포환경개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실시합니다.

1.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점포환경개선비용에서 당사가 비용분담을 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2.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가맹본부 요청 시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경영지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맹점에 방문 → 경영활성화를 위한 가맹점 개선사항 파악 → 개선사항 발생 시 가맹점에 서면으로 해당 내용 안내	가맹본부 부담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가맹본부는방문일시, 소요비용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안내 → 가맹점방문→ 경영지도	가맹점 부담

4. 신용 제공 등 내역

☞ 해당사항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해당사항 없음.

IX.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 내용 및 필수적 사항인지 여부

☞ 당사는『푸라닭』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필수여부
개업·양수 시 교육	사전 교육	제품 교육, 노무 교육, 세무 교육 등	온라인 교육	본사 오프라인 교육 입교 전	필수
	1일차	브랜드 이해 및 조리 교육	오프라인 교육	최소 개업 일주일 전	필수
	2일차	조리교육			
	3일차	조리교육			
	4일차	조리교육			
	5일차	평가 및 수료식			
특별 교육	신메뉴 출시, 조리 매뉴얼 변경, 계약사항 미준수로 교육이 필요한 경우 등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	추후 공지	필수
재교육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소양과 서비스 마인드 교육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	계약갱신일 전월	필수

※ 교육내용 및 일정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의 최소 시간 및 비용

☞ 귀하가『푸라닭』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 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교육인원
개업·양수 시 교육	사전 온라인 교육(2.5시간), 본사 오프라인 교육(42시간)	5,500,000원(VAT포함)	가맹점사업자 포함 2인
특별 교육	추후 공지	실비('가맹점사업자'부담)	추후 공지
재교육	본사 교육 1일(8시간)	실비('가맹점사업자'부담)	가맹점사업자 포함 2인

※ 교육일정, 장소 및 비용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 교육・훈련은 가맹 계약을 맺는 당사자 및 직원 모두가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직계존비속 및 가족의 범위 내에서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가맹점사업자가 불참할 경우에 가맹본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귀하는 당사가 정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개점을 할 수 없으며, 점포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갱신거절 사유, 상품 공급 중단 및 가맹계약의 해지 사유가 되오니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사는 2024년 말 기준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해당 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해당 없음

[별첨1_1] 구입요구품목의 종류 및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1_2] 주요 품목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2]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2022~2024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